

「국도관리원 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국도관리원 관리규정」
(국토교통부 훈령)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

「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과 「국도관리원 관리규정」의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이 서로 상이 한 부분이 있어 이를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『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』 제20조제15항 및 『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』 제41조와 맞게 휴가 기간을 변경(자녀 3명 → 자녀 2명)

- 근로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나. 『국가공무원법』 제72조제1항제7호 및 『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』 제33조제1항제4호와 맞게 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추가 명시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: 3년 이내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
- 팩스 : 044-201-559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보마당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(전화 044-201-3915, 3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